

# 전자문서 통합 보관할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눈앞

과거에 비해 단순히 종이 문서를 보관, 열람하는 이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 이면에는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저변 확대의 폭을 넓혀가고 있는 전자 출판의 급상승률이 내재돼 있다. 이제는 손에 놓고 보는 기능을 가진 문서가 아니라 보관이 용이하고 가독률을 높일 수 있는 매개체가 도래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일례로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휴대폰 문자를 송신하는 것 또한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전자 문서의 한 유형이다. 개인별 휴대폰 보유 현황에 있어서도 'OECD 가입 국가 중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한 연구기관의 발표를 차치하더라도 각 가정에서 쓰고 있는 휴대폰 등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 기기만 보아도 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다. 그렇다면 국내 전자 문서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을까.

## 전자문서도 이젠 보관해야

이젠 전자문서도 하나의 지적 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마련됐다. 산업자원부가 최근 전자거래기본법 중 하위법령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 대한 제반 조항을 마련, 본격적인 담금질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자문서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 범주는 어디까지를 지칭하는 말일까.

전자문서는 웹상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정보 전달, 공유 매개체를 총칭하는 말이다. 흔히 기획 편집 실무자들이 Mac과 IBM 상에서 작업을 마치고 정보를 송신하는 PDF 등의 전자문서변환장치도 이 범주에 해당된다.

문서의 전자화는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종이 문서를 베이스로 업무 수행하는 것으로 원본은 종이문서다. 2단계로는 종이·전자문서가 병존하는 것으로 이 역시 원본은 종이문서다. 3단계는 디지털화된 종이없는 매체를 만드는 것인데 기준 단계와 차별화되는 점은 원본이 전자문서라는 점이다. 현재 국내 기업의 전자문서 등급은 대부분 2단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단계를 뛰어넘어 3단계를 지향한다는 차원에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설립 눈앞에

최근 들어 보관소가 중점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자 문서를 하나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개발·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적인 테두리가 생긴다는 것. 또 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하는 기업이나 개인들은 자신이 작업한 문서들을 불법 복제 했을 때 이의제기나 소제청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용이하다는 것. 이러한 현실적인 요구 사항에 대한 뒷받침이 바로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설립으로 표출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대기업 계열

시스템 통합 업체도 관련 인력과 설비만 갖추면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지정받을 수 있다. 산자부는 내년 상반기에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을 위한 공고를 낼 예정이다.

## 산자부와 정통부의 입장

산자부와 정통부는 기업이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바꿔 비용을 줄이려면 정부가 활성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원론에는 일치한다. 그러나 추진 방법에 대해서는 커다란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산자부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제도를 통해, 정통부는 지정제도를 통한 진입 제한보다는 등급별 인증제도 같은 다른 수단이 강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자부는 기업이 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 없이 전자문서를 위탁 보관하려면 정부가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지정해서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다. 한마디로 지정 제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정통부는 등급별 인증제도 도입 등 다른 수단이 강구돼야 한다는 주장이 압도적이다. 무분별하게 지정하는 것을 피하자는 뜻이다. 또 자칫 잘못하면 대기업에 편중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달 무역협회에서 개최된 전자거래기본법 하위 법 관련 개정안에서 제시된 이같은 의견은 각 부처간 벽이 높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커지고 있지만 대법원이 민사 소송법 등을 적용하는데 전자문서를 인정하지 않는 등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다”며 “전자문서 이용을 촉진하려면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지정해 기술력에 대한 신뢰성을 주고 직원에 의한 정보유출도 엄격히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이에 대해 ‘법무부와 공동 입법한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자부장관은 대통령령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중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다(전자거래기본법 제7장 보착)’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정통부는 “전자문서 이용 확산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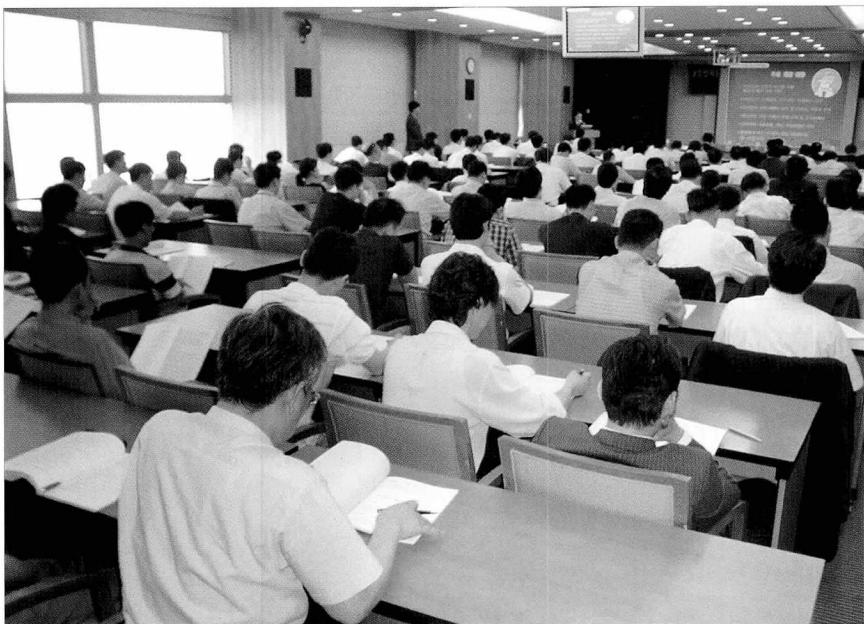


## 산자부와 정통부는 기업이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바꿔 비용을 줄이려면 정부가 활성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원론에는 일치한다.

그러나 추진 방법에 대해서는 커다란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산자부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제도를 통해, 정통부는 지정제도를 통한 진입 제한보다는 등급별 인증제도 같은 다른 수단이 강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 I. 슈. |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행을 위한 공청회가 최근 무역협회에서 열렸다.

위해 정부가 정책적 수단을 써야 한다는 사실에는 공감하지만 일정 자본금 이상 되는 기업이나 기관을 공인으로 지정해서 규제를 가하진 말아야 한다”고 자율성론에 주장의 무게를 실었다. 또 “시장 진입은 자유롭게 하되 정부가 보관소에 등급을 매겨 신뢰성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진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인터넷 비지니스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 급변하는 기업 환경

이러한 분위기에서 직시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S/W 개발 및 취급 업체들의 움직임이다. 이제는 자사에서 개발한 하나의 컨텐츠만으로는 독립적인 사업 운영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 전반적인 S/W 시장의 분위기다.

예를 들면 통관망 접속 사업자로 지정돼 전자무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KT NET이나 금융 공동망을 운영하는 증권망, 그룹사 전산시스템을 유지보수 및 운영하는 대형 SI업체, 그리고 대형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통신 회사들은 각 업체가 주력 공급하고 있는 소프트·하드웨어의 개발 및 보급을 광통신망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추진 중에 있다. 또 이를 바탕으로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진입 여부와 채산성을 저울질하고 있다. 한마디

로 구조적인 변화가 전자문서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관련 업체들에게서 감지되고 있다.

인쇄·출판과 광통신 사업의 연계 점을 부각시키며 PIN 프로젝트를 시장에 선보인 한국화상정보제관조합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에 대한 움직임을 감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달에는 국내에 독보적인 편집·조판 시스템인 QuarkXPress를 공급하고 있는 인큐브테크도 쿼크하드를 통해 기업의 체제 변화를 꾀하고 있다. 또 전자문서 보관업무의 핵심기술을 지원하는 백업, 스토리지 개발 업계와 DRM(디지털저작권관리) 등 보안 솔루션 업계들도 비즈니스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KT NET 한 관계자는 “전자무역 서비스의 통합망은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한 출자를 통해 얻은 결과로 최근에 와서야 흑자로 전환됐다”며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 역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인 만큼 시장성에 대한 예측과 비지니스 모델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지적했다. 이 같은 의견은 바로 통합전산망을 이용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인프라 시설이 구축돼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설립, 즉 지정 업체로 선발되기 위한 업체들은 이에 대한

솔루션 개발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투시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 관련 업체 움직임 뜨거워

관련 업체들의 움직임이 빌 빠르다. 스토리지 업체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 활성화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의 초기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 특히 이달부터 개정되는 전자문서기본법 발효는 스토리지 업체들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 참여를 보다 더 촉진시킬 요소로 작용될 전망이다.

한국EMC는 주력 제품인 ‘EMC 다큐멘텀 ECM 솔루션’과 CAS 시스템인 ‘EMC 센테리’를 앞세워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으로 인해 불거진 컴플라이언스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특히 전자문서가 널리 활성화되고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100% 원본 훼손 가능성에 배제된 스토리지 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전자문서의 생성부터 영구 보존 까지 책임질 수 있는 솔루션을 선보였다.

‘페이지 브라우저’를 선보인 인트라 테크는 웹상에서 대용량 파일도 바로 표시하면서 동시에 네트워크 순간 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시장에 출시했고 유니온정보시스템은 조만간 EDMS와 공인전자문서관리시스템의 연계 모델을 소개할 예정이다. ‘액티브 콘텐트’를 ECM 솔루션의 핵심기술로 선보인 이노티지도 파일네트 플랫폼의 액티브 컨텐츠를 선보였다. 기존에 출시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적으로 감지하고 이에 소요되는 업무 지연시간을 최소화하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 트라이튼 테크의 ‘이지존(eG-Zone)’은 지난 2002년 행정자치부 기록보존소 자료관 시범 사업을 수주할 때 인정받았던 솔루션을 내세워 차별화된 자료관 시스템을 구현한다는 복안이다.

### 역효과에 대한 우려도

이렇게 정부가 발표한 시책을 놓고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국내 여

건에 비춰봤을 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 현재 전자문서를 보관, 증명할 수 있는 제3자 기관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기존의 공인인증기관과 비교해 보면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전자문서 보관, 송수신, 증명, 폐기 및 부가 기능을 제공한다. 기능이 한 곳에 집중될 경우 통합 운영소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을 또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의 올바른 추진을 위해서는 향후 ▲전자문서 보관 요건, 방법, 절차 표준지침 ▲공인전자문서보관소 표준 업무 준칙(보관소 업무)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설, 장비, 기술 기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일반관리 요령 등에 대한 세부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돼야 한다. 사업자 선정이 가시화된 시점에서 추진하기엔 정부의 역량이 한계가 있음을 뜻한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업체들의 시선도 그리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산자부가 보관소 설립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출에 따라 향후 사업 진출을 원하는 대기업들은 손쉽게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지정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순수한 기술력으로 승부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의 시선은 그리 끊지 않다. 자본이 없으면 경쟁 체제에 뛰어들 수조차 없기 때문이다. 대기업 관계자들의 반응도 별반 다르지 않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설립 요건은 낫췄지만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손익계산이 뚜렷치 않다. 또 사업자 선정 시점이 당초보다 6개월 이상 늦춰진 내년 상반기로 미뤄진다는 점이 실무자들로 하여금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애써 준비해 온 사업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 조기 정착이 관건

주사위는 던져졌다. 정부는 현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설립을 추진 중이고 각 기업들의 움직임도 채산성 확보를 전제로 발빠른 대응책 마련을 준비 중이다.

내년 초 정보 전략계획(ISP)을 통해 산

업별로 1개씩 총 10개 내외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설치될 계획이다. 액면 상으로 드러나는 1차 효과는 각 기업들이 만든 전자 문서들의 표준화 작업이 기대된다. 또 전자문서보관소 운영 업체들의 전자문서 보관 업무가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로 인해 보안 및 컨설팅, 통계 서비스 등도 새롭게 창출될 전망이다.

내년 중 전자문서보관 관련 기술을 확보한 민간 사업자들에게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 제안 자격이 부여돼 승인을 획득하면 이들은 지정사업자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선정 업체들은 문서 보관과 인증은 물론 다양한 부가수익 사업을 펼칠 수 있다. 전자문서 DB화 서비스도 기대된다. 그러나 이렇게 장밋빛 청사진만이 눈 앞에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전자문서교환(EDI), 확장성표기언어(XML)기반 솔루션 그리고 최근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지식관리시스템(KMS),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 등의 핵심인 전자문서들이 개발 및 구축업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국 이에 대한 기술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중요한 변수를 안고 있는 것이다. 세계 최초로 추진 중인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향후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고비는 또 있다. 손해배상 문제다.

과실로 인해 보관소가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 배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 특정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가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지정을 받은 후 계열사들의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도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정부와 민간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보관소 관련기업과 비관련 기업을 대비시켜 분석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한 관계자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설립은 최근 국내 전자문서 보급률에 비춰봤을 때 안정적인 정착이 시급하다”라며 “일단 진행이 가시화된 만큼 전부의 시책을 각 관련 단체와 기업들이 얼마만큼 따라갈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장홍일 기자〉



내년 중 전자문서보관 관련 기술을 확보한 민간 사업자들에게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 제안 자격이 부여돼 승인을 획득하면 이들은 지정사업자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선정 업체들은 문서 보관과 인증은 물론 다양한 부가수익 사업을 펼칠 수 있다. 전자문서 DB화 서비스도 기대된다.

